

이슈분석

##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Ⅱ)

### -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박성재·강순희\*

#### I. 자격제도 변천의 개요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간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단체, 협회, 기업 등 민간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발급하여 운영하는 민간자격이 각각 따로 발전하여 왔음.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1953년 3월 제정된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 건축, 전기 등 3종의 건설기술자가 효시임. 1958년부터 국가가 기술자격을 대상으로 한 자격제도를 관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일관된 자격관리 체제를 구축한 것은 아니고 각 사업법별로 관련부처가 기술자격을 관리함. 즉 보일러공(내무부), 전기기사(상공부), 자동차 정비(교통부), 건축기사(건설부) 등과 같이 해당부처가 관련자격을 관리하고 검정을 실시하는 체계였음.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될 때까지 10개 부처에서 기술사법 등 19개 법령에 의거해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여 왔음.
  - 민간자격은 1950년대 후반부터 주산, 부기, 타자와 같은 주로 사무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함.
- 1962년 경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숙련정도가 높은 기술계 인력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1967년 1월 ‘직업훈련법’을 제정하고 직업훈련제도를 정비함. 이 과정에서 기능검정제도에 의한 기술계 인력의 관리가 시작되었으나 부처나 개별 법

\*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arksj@kli.re.kr),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hkang@kli.re.kr).

령상의 특수 목적에 따른 자격이 여전히 존재해 자격기준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중복 및 유사자격의 난립으로 인한 제도운영의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함.

- 1973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6개의 검정단체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 왔던 자격제도를 노동청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면서 국가기술자격체계가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됨. 1975년부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기술자격검정이 실시되었는데 검정업무(한국기술검정공단)는 과학기술처가 담당하였음. 사무관리 분야의 경우 검정의 공신력 제고와 감독체제의 일원화 방침에 의해 1977년 한국사무능력개발원을 발족시켜 사무관리자격의 통합검정을 실시하다가 1981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해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 시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사무관리 분야의 검정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으로 흡수함.
- 1982년 직업훈련사업이 크게 확충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모두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직업훈련사업을 전담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현재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됨. 이에 따라 공단이 기술계와 기능계,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다가 1984년 1월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검정을 다시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함.
- 1997년 3월 ‘국가기술자격법’ 체계와는 별도의 ‘자격기본법’을 제정함. ‘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우수 민간자격에 대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자격을 통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999년 9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자격관련법 체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격에 대한 기본법이자 체계화된 법률을 제정해 자격관리를 체계화하고 아울러 민간자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이에 따라 그간의 국가기술자격 8등급 체제를 5등급(기능사보, 기능사2급, 1급, 기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사1급, 기능장, 기술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으로 단순화하고 응시요건 중 경력기간을 단축함. 또한 국가자격 기준제정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공인기준과 절차를 명료화하였으며 국가자격 검정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자격제도 내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자격의 신설, 개선, 폐지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자격제도 심의기구의 일원화 방안, 국가기술자격법과 개별 법령에 의한 유사자격의 통합방안 등은 현재 과제로 남아 있음.

## Ⅱ. 최근의 자격제도 관련 주요정책

- 자격제도 관련 통합법 제정추진 : 자격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교육부는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한 가칭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부처간 업무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류되었음.
- 정보소양 인증제 시행 : 21C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정수준의 정신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선발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1999년 고교 1년생부터 정보소양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대학입시부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국가직업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과 기초직업능력(Key Skills)인증제도 도입검토 : 2001년 ‘자격기본법’ 개정시 NSS와 기초직업능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현재 도입의 타당성, 기존 자격제도와와의 관계, 주관기구, 인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전개 등 :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근로자를 양성키 위해 사업장 내에 ‘인적자원관리팀’을 설치하고 인사·노무부서 직원이나 직업능력개발 담당자를 배치해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 Ⅲ. 우리나라 자격의 분류 및 운영

- 자격은 자격의 인정 및 시행주체, 직무능력 범위,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시행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우리나라 자격제도 체계(2002년 8월 현재)

구 분		종목수	직무분야	관련법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622	26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120	18	부처별 개별법령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38	-	자격기본법
	민간자격	-	-	자격기본법
	노동부인정 사내자격	31	-	고용보험법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20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 「민간자격국가공인」.

노동부,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 2002.

노동부, 내부자료, 2002.

## 1.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국가(노동부)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기술·기능계 및 사무관리직 자격이 주종을 차지하며 2002년 8월 현재 26개 직무분야에 622개의 자격이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계 분야의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통신, 조선 등 26개 직무분야로 분류되며 이 중 기계(123종목), 금속(48종목)이 전체의 27.5%에 이르고 있음(표 2 참조).
  - 국가기술자격의 자격등급체계는 기술·기능계 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 체제임.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사업서비스 분야와 기타서비스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서비스는 다시 기초사무(속기, 비서 등 19개 분야)와 전문사무(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17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기초사무는 1~3급의 3등급이며 전문사무는 1~2급의 2등급임. 기타서비스는 기능장과 기능사의 2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르나, 산업기사 이상은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이 있음. 일부 자격은 반드시 일정한 학력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함.
  -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산업기사: 전문대졸 이상이거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자격, 산업기사 수준의 교육훈련기관 이수자, 국제 및 국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의한 명장,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기사: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거나 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이수, 전문대학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이 수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다른 종목 기사자격, 동일종목 외국자격 소지자

<표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자격 종목수(2002. 8)

	전 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 기계	123	10	10	15	31	57
2. 금속	48	6	6	7	10	19
3. 화공 및 세라믹	20	5	1	4	5	5
4. 전기	20	5	2	4	5	4
5. 전자	17	3	1	4	5	4
6. 통신	20	1	1	5	6	7
7. 조선	9	3	-	1	1	4
8. 항공	9	2	1	1	1	4
9. 토목	30	11	-	4	4	11
10. 건축	34	4	2	3	7	18
11. 섬유	31	6	2	4	10	9
12. 광업자원	16	4	-	3	4	5
13. 정보처리	9	2	-	2	4	1
14. 국토개발	13	4	-	4	3	2
15. 농림	39	6	1	9	9	14
16. 해양	23	4	-	9	6	4
17. 산업디자인	9	1	-	3	3	2
18. 에너지	6	3	-	2	1	-
19. 안전관리	19	7	1	5	5	1
20. 환경	13	4	-	4	4	1
21. 산업응용	38	5	-	10	8	15
22. 교통	3	1	-	1	1	-
23. 공예	22	-	1	-	4	17
24. 음·식료품	11	-	2	-	1	8
25. 위생	5	-	2	-	-	3
전 체	586	97	33	104	138	214

주: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서비스계 36개 종목은 제외된 것임.

자료: 노동부,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 2002. 5.

- 기능장: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수료하거나, 11년의 실무경력, 동일종목 외국 자격 소지자
  - 기술사: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 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이수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이수자로서 9년 이상 실무경력, 동일종목 외국자격, 또는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국가기술자격검정은 정기검정과 수시검정으로 나누어 시행됨.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되며 기술사의 경우 구술형 면접시험이 추가됨. 실기시험의 형태는 작업형, 면접형, 필답형, 복합형(작업형+필답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기 및 필기 시험의 합격기준은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함. 그러나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 분야 기술자격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검정하거나 필기 혹은 실기검정만 치르기도 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수는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 기술·기능계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2001년 현재 736만명에 이르고 여기에 상공회의소에서 취득한 사업서비스 분야 자격취득자수(268만명)를 합산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1,004만명에 이룸. 복수취득자를 감안하더라도 기타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취득자까지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자격소지자수는 적어도 1천만명 이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1개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3> 국가기술자격을의 등급별 자격취득자수(2001년 12월 현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전 체
기 계	2,037	3,831	47,638	180,027	1,767,640	193,059	2,194,039
금 속	308	318	8,233	12,798	84,351	4,489	110,497
화공및세라믹	483	59	6,084	18,064	176,947	1,733	203,370
전 기	912	520	79,998	107,608	335,674	31,753	556,465
전 차	128	132	7,154	23,820	425,123	24,793	481,150
통 신	307	13	22,597	89,248	638,801	10,642	761,608
조 선	165	0	1,079	1,194	7,122	72	9,632
항 공	40	2	657	4,801	35,338	0	40,838
토 목	8,154	0	77,363	47,142	127,021	5,398	265,078
건 축	6,641	41	84,181	66,582	212,239	58,491	428,175
섬 유	86	20	1,792	4,990	42,786	12,617	62,291
광업자원	188	2	4,564	6,593	32,584	7,286	51,217
정보처리	600	0	107,602	124,176	305,626	869	538,873
국토개발	533	0	16,095	16,815	24,234	1,855	59,532
농 립	214	4	4,720	5,107	54,839	2,574	67,458
해 양	96	0	2,520	5,124	8,386	298	16,424
산업디자인	5	0	147	2,086	35,484	0	37,722
에너지	434	0	10,401	623	0	0	11,458
안전관리	1,356	262	92,862	105,500	51,881	0	251,861
환 경	589	0	40,131	49,653	12,432	0	102,805
산업응용	1,142	0	30,668	36,881	73,309	6,168	148,168
교 통	239		1,369	5			1,613
공 예	0	17	0	818	52,302	8,288	61,425
음식료품	0	142	0	558	541,109	802	542,611
위 생	0	149	0	2,243	355,863	354	358,609
전문사무	0	0	0	3,297	0	0	3,297
전 체	24,657	5,512	647,855	915,753	5,401,091	371,541	7,366,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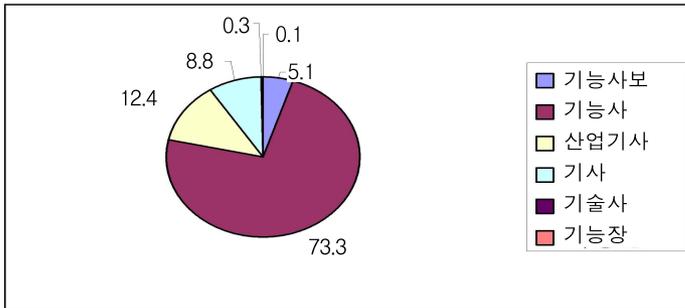
주 :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서비스계 자격취득자는 제외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2002. 2.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자격등급으로 살펴보면 기능사(73.3%), 산업기사(12.4%), 기사(8.8%), 기능사보(5.1%, 1999년 이전 취득자), 기술사(0.3%), 기능장(0.1%) 순으로 나타나 고숙련·고기술 자격인 기술사, 기능장, 기사등급은 전체 자격취득자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등급별 분포

(단위: %)



## 2. 기타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은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자격으로 2000년 현재 24개의 소관부처에서 56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120개의 국가자격이 있음(건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직종은 보건복지부(27개), 건교부(15), 해양수산부(14), 문화관광부(10), 농림부(8), 교육부(7) 순이고 나머지 부처는 1~4개에 그침.
  - 기타의 국가자격은 직무분야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나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직무분야로 구분해 볼 경우 의료·보건분야 27개, 전문사무 24개, 해양 15개, 교육·사회복지 12개 순임(직무분야를 기준으로 기타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하면 모두 30개의 직무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의 대부분이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데 반해, 기타의 국가자격은 약 34%가 자격시험 응시에 학력제한을 두고 있음. 특히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요구하는 자격은 대학에서 자격과 관련된 전공의 이수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기타의 국가자격 중 25%는 자격등급이 있는데, 자격등급이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1~6급'으로 이루어진 자격이 많음.

### 3. 민간자격

- 민간자격은 민간협회나 민간기관, 기업에서 관리·운영하는 자격이고 공인민간자격은 민간자격 중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국가가 공인한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사내자격은 민간자격의 일종으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임.
  - 민간자격은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민간자격의 도입취지는 자격정책들을 정비하고, 민간자격을 활성화시켜 자격을 통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민간자격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또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음. 이처럼 민간자격은 자격체제에 민간자격을 활성화해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맡겨짐에 따라 자격의 질 관리 문제, 허위·과장광고와 영리중심운영에 따른 사회적 물의와 소비자 피해, 자격제도간 연계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도 함. 또한 민간자격의 신설, 폐지 등에 대한 신고 혹은 등록절차가 없어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현재 민간자격은 459개 종목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자격 관련 전문기들은 1,000여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자격들의 직종 및 분야, 자격검정방법과 자격취득자 질 관리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인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 중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직업교육훈련과정과 연계를 갖고,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며,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공인한 자격임.
  - 2002년 8월 현재 공인민간자격은 8개 부처의 35개 종목임(표 4 참조).
- 사내자격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사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격검정과 연계한 것으로 민간자격의 한 유형임.
  - 노동부 인정 사내자격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그 대상으로 노동부가 정한 인정기준을 갖춘 경우 사업주에게 자격개발비와 검정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일반 민간자격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목적으

로 하는데 반해 사내자격은 사업장내 특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통용성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

- 2001년 현재 11개 기업체의 31개의 자격이 노동부의 '인정사업내검정'으로 인정 받고 있음(표 5 참조).

○ 마지막으로 자격인증 주체가 해외에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인 국제자격이 있음.

- 국제자격으로는 Microsoft, Oracle, Sun사 등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 사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술관련자격과 선물거래중개사(AP), 미국공인 회계사(AICPA), 증권분석사(CFA) 같은 경영관련 자격이 대표적임.
-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일간 IT자격의 상호인정협약을 맺었고, 교류확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정종목과 인정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APEC Engineer 상호인정사업에 의거해 현재는 토목, 구조 2개 분야에서 상호인정하고 있지만 향후 정보, 환경, 기계, 전기공학 등 9개 기술분야로 확대할 계획임.
- 기타의 국가자격 역시 국제 기구에 가입을 추진하여 자격의 질 제고와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예, 건축사).

#### IV.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조직

○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조직은 자격제도 유형에 따라 상이함.

○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은 정부 24개 소관부처가 관장함(자격취득자 활용, 자격취소 등 행정처벌).

- 소관부처는 검정시행 계획의 수립, 검정의 시행공고, 합격자 결정, 등록,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 및 정지, 보수교육 등의 권한을 가지며 아울러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자격취득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키는 권한을 가진.

○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기술자격을 관장하고 자격제도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검정시행 계획수립, 법령 및 제도운영관리,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운영). 단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함.

<표 4>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2002년 8월 현재)

정부부처	자격관리자	자격종목
재정경제부	한국금융연수원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역, 국제금융역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어문화	한자능력급수
	한국외국어사무서비스자격평가원	실용영어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기계정비사, 사출금형제작사, 프레스금형제작사, 전기계측제어사, 무역영어
정보통신부	삼성SDS	E-Test(e-professionals)
	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감리사
	피씨티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정보검색사(1, 2급, 전문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네트워크관리사
노동부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자격(ITQ)시험
	대한상공회의소	기계전자제어사, 치공구제작사, CNC기계절삭가공사, 기계설계제도사,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공작기계절삭가공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산업전자기기제작사, 컴퓨터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회계정보(처리)사 인증시험(1, 2급)
	한국정보관리협회	문서실무사(1~4급)
	대한글씨검정교육회	펜글씨검정(1~3급)
산림청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한국수목보호연구회	수목보호기술자격
보건복지부	한국분재조합	분재관리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조달청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병원행정사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구매·자재관리사(2급)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cgi-bin/nqual.cgi>).

<표 5>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현황(2002년 8월 현재)

사업체명	검정종목
해인	건설기계정비(전기분야, 엔진분야, 유압분야, 동력전달분야)
삼성SDS(주)	Innovator
삼성에버랜드	방재관리사, Six Sigma(GB, BB, MBB), Building Facility Management
한전기공	기계, 전기, 계측제어, 핵연료장전, 품질, 비파괴검사, 용접, 공업세정, 송전정비, 크레인운전
LG전자	Six Sigma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비파괴검사(RT, UT, MT, PT)
삼성전기	Six Sigma(WB, GB, BB, MBB, Champion), AMEE
삼성전자	Six Sigma(GB, BB, MBB)
삼성전자서비스	가전서비스, AV서비스, 통신서비스, PC서비스(ENG 1~3급)
아남전자서비스(주)	TV, VCR, AD/가전(Master, 1급, 2급)
LG엔시스(주)	Six Sigma(GB, BB, MBB)

자료 : 노동부, 자격지원과 내부자료, 2002.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 중 기타 서비스계, 그리고 소관부처로부터 위탁받은 기타 국가자격 검정을 담당하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 분야의 검정을 담당하고 있음. 업무 위탁범위는 시험문제 작성, 출제관리, 시험집행,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자격검정 전반과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포함함.
- 국방부는 1976년부터 기술·기능분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자격검정을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음. 단, 자격검정은 산업기사, 기능사의 2개 등급에 한함.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에 대한 등록, 기술자격증 교부,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을 직접 관장함.
- 민간자격은 해당자격을 신설, 운영하는 협회, 기업 등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제도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짐.

## V. 자격제도의 문제점

### 1.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부재 및 비전과 방향설정 미흡

- 교육훈련정책과 자격제도 운영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도 각 부처가 필요에 의해 제각기 운영하여 온 관계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제도나 관리·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함.
  -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격제도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지만 국가수준에서 일관된 자격체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각종 자격간 연계, 자격관련 부처간 역할분담, 그리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역할분담과 연계 등이 여전히 미흡.
    - 국가차원의 종합적 자격관리·운영체제 미구축
    - 자격관련 종합정보제공체계 미흡
    - 학위와 자격, 자격유형간, 종목간의 통합적·체계적 연계(등가화와 취득요건 등) 기준 미설정

- 국가차원의 자격체제 및 시스템 구축의 미비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가차원의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틀, 자격의 비전과 역할 그리고 방향설정의 미흡으로 나타남.
- \* 영국(NFQ, SCQF), 호주(AQF), 뉴질랜드(NQF) 등에서는 학위를 포함한 인문자격과 직업자격간의 유기적 연계체계의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자격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학력과 자격이 각기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상호 보완 및 대체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2. 능력의 신호기체로서의 기능 미흡

- 자격제도가 인적자원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기체(signaling mechanism)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학력지상주의 풍토 속에서 자격-노동시장의 연계가 미흡한 채 자격을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틀에 우선하여 접근함으로써 학점인정제 등을 통하여 자격이 학력의 보조 또는 학력취득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격증이 개인이 지닌 능력(competence)을 보여주는 본래의 지표(능력인정형 자격)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산업현장과 거리가 있는 출제 및 자격검정 등으로 인해 자격증이 해당직무에 대한 능력의 선별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 산업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에 있어 민간참여가 제한적임.
    -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민간자격에 관한 질관리, 정보·관리체계의 미비로 민간자격의 활성화에는 한계

## 3. 능력개발선도기능 미흡

- 자격이 현장성을 결여하고 능력인정 기능이 미흡한 결과 사회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격취득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 유인효과가 미약함.
  - 학위취득의 우회수단을 제외하면 자격이 개인의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기능은 미흡
  - 또한 교육과정과의 유리로 자격이 기초직업능력(core competencies, key skills)의 개발을 유인하는 기능도 미흡함.